



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
2022. 5. 19. 시행

이해충돌방지법
알아보기

'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' 왜 제정됐을까요?



- 1**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부패사건 지속 발생
- 가족채용 비리, 퇴직자 전관예우 등 새로운 유형의 부패 통제 필요
- 2** 선출직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움
- 국회의원, 지자체장 등의 사익추구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장치 필요
- 3** 국제사회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행위기준 정립
- 미국, 캐나다, 프랑스 등 OECD 가입국은 대부분 이해충돌방지 법제도 확립



Q

공직자의 이해충돌이란?

A

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.



사 례

- 공공기관장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
- 고위공직자가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에 자신의 자녀를 특별채용토록 지시하는 경우
- 인허가 업무 담당 공직자가 자신의 동생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



Q
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기능은?

A

- 이해충돌 사전 예방·관리!
- 부당한 사익 이익 추구 방지!
-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!
-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!



“
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
공직자는 떳떳하게 직무수행을 하고
국민들은 공정한 직무수행을
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.
”

Q
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내용은?

A

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이해충돌 상황에서
공직자들이 해야 할 5개의 신고·제출 의무와
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·금지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.

신고·제출 의무

- ①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·회피신청
- ②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·매수 신고
-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
-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
-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

제한·금지 행위

- 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
- ② 가족 채용 제한
- ③ 수의계약 체결 제한
- ④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·수익 금지
- ⑤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



Q
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대상은?

A

공무원,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,
국·공립학교 교직원, 공무수행시민*

*각종 위원회 위원 및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시민



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자 제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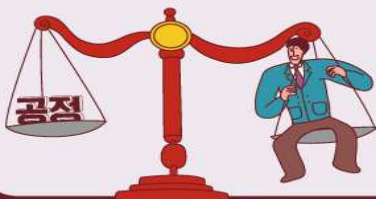
|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

|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규정 위반 : 형사처벌

-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 :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, 재산상 이익 몰수·추징
-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을 부당하게 취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제3자 :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, 재산상 이익 몰수·추징
- 직무상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 공직자 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

| 그 밖의 이해충돌 방지규정 위반

: 1천만원 ~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


이해충돌방지법
알아보기

“
「**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**」은
한 단계 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의 밑거름입니다.
”

▲ 누구든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▲
국민권익위원회, 해당 공공기관과 감독기관, 감사원, 수사기관에
신고할 수 있습니다.

위반행위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장, 최대 30억 원 보상금 지급

| 위반행위 신고 | 청렴포털(www.clean.go.kr), 방문, 우편

| 신고상담 | ☎1398, 110(국번없이)

